

무궁화15호, 24호 정기수리(선체) 용역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개요

- 용역건명: ①무궁화15호 정기수리(선체) 용역
②무궁화24호 정기수리(선체) 용역
- 사업금액: ①무궁화15호 정기수리(선체) 42,730천원(부가세 포함)
②무궁화24호 정기수리(선체) 45,483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무15호, 24호 2척 동일)

□ 긴급공고(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예산의 조기 집행
- 아울러, 당초 6일간(4.16.~4.21.) 나라장터에 공고한 이력이 있고 국가
어업지도선 연간수리 계획 고려 및 출동해역 공백 방지를 위함
* 수리일정 지연 시 국가어업지도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업무 공백 발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